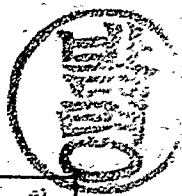


정기검정
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법무 181.67 > 4 (전화번호 725-6379.)		전결규정	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시 장			
시행일자	82. 10.			
보존년한	영구 (갑)			
보조 가 관	부시장	기획관리실장	법무담당관	법제계장
기안책임자	이상돈			
경유 수신 참조	과안참조			
제목	서울특별시 중기운영 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을 개정 규정			
(제1안) 내부 결재				
당시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의 제정 (78.5.30) 및 건설차재 사업소 설치 조례의 제정 (78.5.30)으로 북부건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시보유 중기보관 관리 사업소 및 동사업소를 추가 규정하기 위하여 등 규정을 별첨 (안)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.				
첨부	1. 개정의유 및 주요내용			
	2. 개 정 장 안			
	3. 신 구조 문 대 비 표 각 1부. 끝.			
(제2안)				
수신	공보관			
제목	시보 게재			
별첨 서울특별시 중기운영 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함 것.				
첨부	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 끝.			

정서
김
환인
발송
이재

(제3안)

수신 : 종합건설본부장

제목 : 훈령 발령

별첨 서울특별시 중기운영관리 규정중 개정 규정을 시보에 게재
발령하였으나 시행에 착오 없도록함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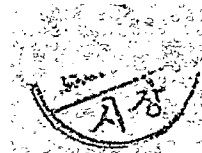


1. 개 정 이 유

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의 제정 (78. 5. 30. 조례 제1251호)으로 북부건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개정임.

2. 주 요 내 용

시보유중 기보관 관리 사업소중 북부건설사업소 추가



6-3 993

274

서울특별시 중기운영관리 규정중 개정 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

1972년 10월 14일

서울특별시장 김성백



서울특별시 혼령 제

서울특별시 중기 운영 관리 규정중 개정 규정

서울특별시 중기 운영 관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북부건설사업소

부

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

시장

444

276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3조 (보관 관리) 서울특별시 소유 중기는 다음 각 사업소에서 본 배 하여 보관 관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기관리사업소 2. 동부건설사업소 3. 남부건설사업소 4. 서부건설사업소 5. 건설자체사업소 	<p>제3조 (보관 관리) - 좌동 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 5. - 좌동 - 6. 북부건설사업소